(첨 부2)

비수도권 지역인재 인정범위

※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 및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지침을 따름

〈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고졸인력에 해당하는 경우〉

□ **(비수도권 지역인재)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**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지역을 제외한 **비수도권 지방학교**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

□ **(고졸인력)**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식, 학력,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*

*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**대학 중퇴자 및 재학·휴학자** 포함

○ 다만, **대학졸업자** 또는 대학**졸업예정자** 등은 고졸자에서 제외

□ **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**

가.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
(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상의 '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, 각종학교'

(2)「고등교육법」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
* (예시) 단국대 천안캠퍼스, 동국대 경주캠퍼스,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
→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여부는 해당 학교에 사전 확인 요망

(3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
(4)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나.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(예시)

(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
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
(3)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상의 평생교육시설

(4)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□ **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**

(1)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
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(3)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□ **2개 대학 이상 재학 등인 경우**

(1)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대학(이하 수도권 소재 대학)과 지방대학을 모두 졸업한 경우

○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: 해당

○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 졸업(예정): 해당

(2) 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

○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: 해당

○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: 비해당 * 단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지방인재에 해당

(3) 대학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

○ 지방대학 중퇴 후 다시 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: 비해당

○ 수도권 소재 대학 중퇴 후 다시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: 비해당 * 단,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지방인재에 해당